

한림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안내

1 현장실습지원비

- 현장실습지원비란 실습기관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
-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 불가

2 실습지원비 산정

현장실습지원비는 해당연도 최저 임금의 75% (교육시간 25%기준)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

○ 월 단위 실습시간 수

-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⇒ [(8 × 5 + 8) ÷ 7] × (365 ÷ 12) = 208.57 ≈ 209시간

○ 월 단위 실습지원비 (75% 지급 기준)

- 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⇒ 209시간 × 0.75 × 10,030원 = **1,572,203원**

○ 월 단위 실습지원비 (100% 지급 기준)

- 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⇒ 209시간 × 1 × 10,030원 = **2,096,270원**

* 실습지원비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,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일은 주단위 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 ⇒ 일할 계산식 : (주 단위 실습원비) ÷ 5 × 잔여날의 수

○ 주 단위 실습시간 수

-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×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값
⇒ (8 × 5 + 8) = 48시간

○ 주 단위 실습지원비 (75% 지급 기준)

- 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⇒ 48시간 × 0.75 × 10,030원 = **361,080원 (일할지급 : 72,216원/일)**

○ 주 단위 실습지원비 (100% 지급 기준)

- 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⇒ 48시간 × 1 × 10,030원 = **481,440원 (일할지급 : 96,288원/일)**

※ 2025년 최저시급 반영 : 10,030원

※ 위 산정식은 주 5일/1일 8시간 기준 산정식이며, 주 4일 또는 1일 6시간 실습진행시 실습지원비는 상이할 수 있음. **(이외 실습지원비 산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**

3

실습지원비 환급 기준

지급	내용	
기관 →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저임금액 100% 이상 지급 • 2024. 1. 2. ~ 2. 28. (총 2개월) : 2,096,270원/월 이상 지급 	
대학 →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저임금액의 25% 환급 • 환급시점에 LINC3.0사업 참여학과만 환급 가능 (p.4 참조) • 환급액 	
	1개월 기준	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일
	524,068원/월	24,072원/일
※ 종료 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기관에만 지급 (실습 종료 후 환급 신청 안내 메일 발송 예정) ※ 최저임금의 100% 초과 지급하여도 대학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은 최저임금의 25%에 해당함 ※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일 : 실 근무일수로 산정하며 공휴일도 포함됨		

4

교육부 중요 지침 사항

가. 회계처리

-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: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「소득세제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.
- ⇒ **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제외 없이 학생에게 지급해야 함**
(단, 4대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근로소득 대상이며 세후 지급되는 금액은 학생에게 안내)
- ※ 문의 : 국세청 (126)

나. 비영리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중 실습지원비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지원비 산정은 최저임금의 75% 이상 금액으로 기업 상황에 맞게 결정하여 실습생에게 지급

[중요 지침 사항]

구분	현장실습생	근로계약서 체결 현장실습생
정의	<p>현장실습생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 의미.</p>	<p>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기준과 범위 외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.</p>
	<p>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조</p> <p>- 현장교육 담당자 지정 및 운영계획 등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함.</p> <p>- 월환산액 기준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%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(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)</p>	<p>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1조</p> <p>- 연장 실습시간이 1주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적용.</p> <p>- 월환산액 기준 당해 연도 최저임금 100%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</p>
근로계약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체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체결</p>
	<p>근로문제 예방 및 학생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미체결.</p>	<p>*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3조</p> <p>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하며,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운영되어야함.</p>
보험가입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재보험만 가입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대보험 전부 가입</p>
	<p>*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18조</p> <p>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</p> <p>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 대하여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」 (고용노동부 고시)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함.</p>	<p>*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3조</p> <p>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적용.</p>
회계처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과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</p>
	<p>-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 2021. 3. 9.</p> <p>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법령해석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, 각 회사별 상황 및 기업회계 규칙에 맞게 비과세 처리</p> <p>*주로 활용되는 현장실습 비과세 계정 : 교육훈련비, 연구 및 인력개발비</p>	<p>*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3조</p> <p>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</p>

* 최저임금액의 100% 미만을 지급 함에도 4대보험 모두 가입(산재보험만 필수) 및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, 노무 관련된 이슈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.

[한림대학교 LINC3.0 참여학과]

* 2023. 10. 10. 기준

단과대	학과(학부, 전공)	단과대	학과(학부, 전공)	단과대	학과(학부, 전공)	
인문대학	국문학과	자연과학대	화학과	정보과학대	- 소프트웨어학부 빅데이터전공 콘텐츠IT전공 스마트IoT전공	
	사회학과		생명과학과			
	철학과		바이오메디컬학과			
사회과학대학	사회학과		식품영양학과			-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임상의학통계전공 데이터테크전공 디지털금융정보전공
	사회복지학부		환경생명공학과			
	광고홍보학과		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전공/청각학전공			
경영대학	경영학과		체육학과		- 인공지능융합학부 AI의료융합전공 AI로봇융합전공 AI기술경영융합전공	
	금융재무학과		글로벌융합대학			
나노융합스쿨	반도체전공					
	디스플레이전공					
미래융합스쿨	디지털인문예술전공	미디어스쿨	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			
	융합관광경영전공		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			
	융합신소재공학전공					
	의약신소재전공					

[한림대학교 LINC3.0 미참여학과]

단과대	학과(학부, 전공)	단과대	학과(학부, 전공)
인문대학	영어영문학과	사회과학대	심리학과
	중국학과		정치행정학과
	일본학과		법학과
	러시아학과		경제학과